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32
----------	-------

발의연월일 : 2023. 11. 20.

발 의 자 : 용혜인 · 이소영 · 강민정
맹성규 · 김홍걸 · 류호정
민병덕 · 김성환 · 강은미
심상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늘어남.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연료비가 증가하였고, 이는 연쇄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하였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교통 수요가 높아져 2023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교통 지출 금액이 21.6% 증가함.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하반기에 전국의 지하철 기본요금, 시내버스 요금 및 광역버스 요금이 모두 인상되었음. 실질소득 증가가 정체된 상태에서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대중교통 정책은 공공 서비스 정책 중 가장 민생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국민들은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에 따른 부담을 높이 체감할 것임.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교통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의 선진국은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누림. 우리나라에서도 대중교통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할 경우, 국민들은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를 먼저 지급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이용자를 새로이 정의하는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대중교통이용자에게 이용료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먼저 지급함. 아울러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다음 연도에 50%를 가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을 보다 활발히 이용하도록 함. 이러한 대중교통 지원금을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10조의13 및 제12조제6호 신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중교통이용자”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3(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용자에게, 제2조제2호가목의 노선버스 또는 제2조제2호나목의 대중교통수단의 기본 이용요금 중 더 높은 요금을 기준으로 연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원하여야 한다(이하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대중교통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하여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중교통이용자가 대중교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경우, 그 다음해에는 전년도 지원금액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한 해에 지원받는 지원금의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 등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7.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대중교통이용자”라 함은 제2조에 규정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u>제10조의13(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용자에게, 제2조제2호가목의 노선버스 또는 제2조제2호나목의 대중교통수단의 기본 이용요금 중 더 높은 요금을 기준으로 연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원하여야 한다(이하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이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대중교통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하여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u>

	<u>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중교통이용자가 대중교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경우, 그 다음해에는 전년도 지원금액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한 해에 지원받는 지원금의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u> <u>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 등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 ----- ----- ----- ----- -----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
수 있다.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6.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u>
<u>6.</u> (생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